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30

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:이해식・이상헌・허 영

김종민 · 서영교 · 인재근

김윤덕 • 윤준병 • 서영석

임호선 · 김원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 상수신자료를 즉각 열람토록 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여론이 높음.

그러나 현재 관제센터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근거가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돼 있다 보니 경찰공무원 파견 등 에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공조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.

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,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 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 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 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 로를 탐지하며,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·사용·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피부착자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특 정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

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의3(위치추적 관제센터의
	설치·운영 등) ① 법무부장관은
	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
	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
	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, 전
	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
	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·사용·폐
	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
	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
	하여 운영할 수 있다.
	② 법무부장관은 피부착자의
	<u>지도·감독을 위하여 경찰청장</u>
	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
	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
	경찰공무원은 특정범죄의 수사
	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치추적
	관제센터의 수신자료를 열람할
	<u>수 있다.</u>